

[] 전유부분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
[] 공용부분

단지 현황	단지 명칭	
	주소	
	사용검사일(사용승인일) 년 월 일	
사업주체	성명(법인명 또는 상호)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
	주소 (전화번호:)	
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(관리인)	입주자대표회의(또는 관리인) 명칭	
	입주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	생년월일
	주소 (전화번호:)	
종료확인 사항	연차별	
	하자담보책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년간)	
	특이사항	

위와 같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·완료하여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39조에 따라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
양
도

< 위 당사자 >

- 사업주체 : (인)
- 입주자 : (서명 또는 인)
-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단의 관리인 (인)

첨부서류	공용부분인 경우만 해당합니다. 1.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(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):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 1부 2.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가.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: 관리위원회 결의서 나.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: 관리인의 확인서 3. 그 밖에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39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의 의견청취 결과 및 하자 보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참고사항	- 전유부분에 대해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39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자는 반드시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-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는 입주자가 공용부분에 대해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. - 이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는 3부를 작성합니다. -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, 1부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 통보합니다.	